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카나다원자력협회간의 협력각서

한국원자력산업회의(서울소재)와 카나다원자력협회(토론토소재)(이하 한국원산 및 CNA라 한다)는 양국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염원에서 우호적인 협의를 거쳐 아래 각서에 합의한다.

제1조 이 각서는 한국원산과 CNA의 기술 및 과학협력을 강화 및 공식화함으로써 양국간의 평화적인 원자력교류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이 각서에서 인정 또는 동의된 모든 사항은 한국원산 및 CNA에 호혜적으로 적용된다.

제3조 한국원산과 CNA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한국원산 및 CNA의 회원사들간의 중수로원자력발전소의 개발, 운전, 유지, 보수 및 핵연료에 관련된 기술정보, 경험 및 자료의 교환을 촉진한다.
2. 상대측의 요청에 의한 원자력계 인사의 산업시찰 및 연구조사 교류에 관하여 협력한다.
3. 원자력산업에 관련된 세미나 및 기술회의의 조직 및 공동주최를 협조하며, 이 회의는 한국과 카나다에서 교대로 개최토록 한다.
4. 상대측이 주최하는 중요국제회의를 사전에 서로 통지하며, 미리 지정하는 3명의 참가자에게는 회의등록비를 면제하도록 한다.
5. 인력양성의 촉진을 위하여 상대방이 주최하는 훈련계획에 회원사를 참가토록 권유하고, 이 훈련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강사, 논문 및 교재를 제공한다.
6. 양측에서 제작하는 원자력기술정보, 기관지, 정기간행물, 영화, 스라이드의 교환과 이들 자료의 번역사용의 승인.

7.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 및 이용의 촉진.

8. 원자력물질, 기기 및 기술의 평화적 교역을 증진하기 위한 교역관계의 개발촉진

9. 기타 상호이익증진을 위한 원자력활동의 협력

제 4 조 이 각서는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, 매5년마다 재협약 또는 연장한다. 이 협약은 한국원산 또는 CNA 어느 일방에서 6개월전에 통지하므로서 해지할 수 있으며, 그 수정은 수시로 양측의 담당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.

제 5 조 한국원산과 CNA는 사전협의 또는 서면약정에 의하지 않는 한 이 각서에 관련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 6 조 이 각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써 2부를 작성하며, 두 각서의 효력은 동등하다.

1986. 6. 9. Canada Toronto에서 서명

한국원산을 대표하여

CNA를 대표하여